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407
----------	-----

2024. 3. 21.
도시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3. 6. / 남양주시장
나. 회부일자 : 2024. 3. 6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3. 2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시·군 특별교통수단의 예약 및 배차 권한이 道-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제13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
- 운영시간(365일, 24시간), 운행지역(수도권)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사항 명시
- 제14조(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 등)
-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 기준은 교통약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
- 제16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- 민간위탁기관 선정은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토록 명시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조공선)

- 본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·연계를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시장, 군수 또는 도지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
- 이에 시·군 특별교통수단의 예약 및 배차 권한이 道-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운영 추진되며, 변화된 여건 등에 맞추어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방법 등의 정비가 필요함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시간, 운행지역 등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사항 등의 문구를 정비하고,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기준은 교통약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개정된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여건을 고려해 개정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